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6560 압류말소등기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
	소송대리인 B, C, D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1998. 4. 3.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9

가. 피고는 1998. 4. 3. E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8. 9. 11. 접수 제24933호로 1984. 2. 1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마침으로서 이 사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취득시효완성일인 2004. 2. 13. 이전 그 부동산에 가해진 각종 부담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과세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그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압류등기를 당연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9

효로 되게 하는 사정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가 그 사유를 이 사건 압류등기를 당연무효로 되게 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함으로써 이전에 그 부동산에 가해진 부담이 소멸하는 것은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의 사정일 뿐 이 사건 압류등기를 당연무효가 되게 하는 사정이 아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등기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요건에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9

판사 조은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9

부동산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군 [redacted]

대 446㎡

-이 상-